**「실용신안법」**

[법률 소화34<1959>년제123호, 2015.7.10. 최종개정]

**□ 개 요**

일본의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하여 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그 고안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총 9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  第一条　目的  第二条　定義  第二条の二　手続の補正  第二条の三　手続の却下  第二条の四　法人でない社団等の手続をする能力  第二条の五　特許法の準用  **第二章 実用新案登録及び実用新案登録出願**  第三条　実用新案登録の要件  (第三条の二)  第四条　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考案  第四条の二　仮通常実施権  第五条　実用新案登録出願  (第六条)  第六条の二　補正命令  第七条　先願  第八条　実用新案登録出願等に基づく優先権主張  第九条　先の出願の取下げ等  第十条　出願の変更  第十一条　特許法の準用  **第三章 実用新案技術評価**  第十二条　実用新案技術評価の請求  (第十三条)  **第四章 実用新案権**  **第一節 実用新案権**  第十四条　実用新案権の設定の登録  第十四条の二　明細書、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の訂正  第十四条の三　訂正に係る補正命令  第十五条　存続期間  第十六条　実用新案権の効力  第十七条　他人の登録実用新案等との関係  第十七条の二　実用新案権の移転の特例  第十八条　専用実施権  第十九条　通常実施権  第二十条　無効審判の請求登録前の実施による通常実施権  第二十一条　不実施の場合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  第二十二条　自己の登録実用新案の実施をするため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  第二十三条　公共の利益のため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  第二十四条　通常実施権の移転等  第二十五条　質権  第二十六条　特許法の準用  **第二節 権利侵害**  第二十七条　差止請求権  第二十八条　侵害とみなす行為  第二十九条　損害の額の推定等  第二十九条の二　実用新案技術評価書の提示  第二十九条の三　実用新案権者等の責任  第三十条　特許法の準用  **第三節 登録料**  第三十一条　登録料  第三十二条　登録料の納付期限  第三十二条の二　登録料の減免又は猶予  第三十三条　登録料の追納  第三十三条の二　登録料の追納による実用新案権の回復  第三十三条の三　回復した実用新案権の効力の制限  第三十四条　既納の登録料の返還  (第三十五条)  第三十六条　特許法の準用  **第五章 審判**  第三十七条　実用新案登録無効審判  第三十八条　審判請求の方式  第三十八条の二　審判請求書の補正  第三十九条　答弁書の提出等  第三十九条の二　審判の請求の取下げ  第四十条　訴訟との関係  第四十一条　特許法の準用  **第六章 再審及び訴訟**  第四十二条　再審の請求  (第四十三条)  第四十四条　再審により回復した実用新案権の効力の制限  第四十五条　特許法の準用  (第四十六条)  第四十七条　審決等に対する訴え  第四十八条　対価の額についての訴え  (第四十八条の二)  **第七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に係る特例**  第四十八条の三　国際出願による実用新案登録出願  第四十八条の四　外国語でされた国際実用新案登録出願の翻訳文  第四十八条の五　書面の提出及び補正命令等  第四十八条の六　国際出願に係る願書、明細書等の効力等  第四十八条の七　図面の提出  第四十八条の八　補正の特例  第四十八条の九　実用新案登録要件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　実用新案登録出願等に基づく優先権主張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一　出願の変更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二　登録料の納付期限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三　実用新案技術評価の請求の時期の制限  第四十八条の十三の二　訂正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四　無効理由の特例  第四十八条の十五　特許法の準用  第四十八条の十六　決定により実用新案登録出願とみなされる国際出願  **第八章 雑則**  第四十九条　実用新案原簿への登録  第五十条　実用新案登録証の交付  第五十条の二　二以上の請求項に係る実用新案登録又は実用新案権についての特則  第五十一条　実用新案登録表示  第五十二条　虚偽表示の禁止  第五十三条　実用新案公報  第五十四条　手数料  第五十四条の二　手数料の返還  第五十五条　特許法の準用  **第九章 罰則**  第五十六条　侵害の罪  第五十七条　詐欺の行為の罪  第五十八条　虚偽表示の罪  第五十九条　偽証等の罪  第六十条　秘密を漏らした罪  第六十条の二　秘密保持命令違反の罪  第六十一条　両罰規定  第六十二条　過料  (第六十三条)  (第六十四条)  **附　則**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절차의 보정  제2조의3 절차의 각하  제2조의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거칠 능력  제2조의5 특허법의 준용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3조의2)  제4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4조의2 가통상실시권  제5조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조)  제6조의2 보정명령  제7조 선출원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9조 선출원의 취하 등  제10조 출원의 변경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12조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제13조)  **제4장 실용신안권**  **제1절 실용신안권**  제14조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  제14조의2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제14조의3 정정에 관련된 보정명령  제15조 존속기간  제16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17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제17조의2 실용신안권 이전의 특례  제18조 전용실시권  제19조 통상실시권  제20조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21조 미실시의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22조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2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2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제25조 질권  제26조 특허법의 준용  **제2절 권리침해**  제27조 금지청구권  제2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29조 침해액의 추정 등  제29조의2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  제29조의3 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3절 등록료**  제31조 등록료  제32조 등록료 납부기한  제32조의2 등록료의 감면 또는 유예  제33조 등록료의 추납  제33조의2 등록료 추납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회복  제33조의3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제34조 기납 등록료의 반환  (제35조)  제36조 특허법의 준용  **제5장 심판**  제37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  제38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38조의2 심판청구서의 보정  제39조 답변서의 제출 등  제39조의2 심판청구의 취하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재심 및 소송**  제42조 재심의 청구  (제43조)  제4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제46조)  제47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48조 대가액에 대한 소송  (제48조의2)  **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련된 특례**  제48조의3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8조의4 외국어로 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제48조의5 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등  제48조의6 국제출원에 관련된 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제48조의7 도면의 제출  제48조의8 보정의 특례  제48조의9 실용신안등록요건의 특례  제48조의10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48조의11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48조의12 등록료 납부기한의 특례  제48조의13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시기의 제한  제48조의13의2 정정의 특례  제48조의14 무효이유의 특례  제48조의15 특허법의 준용  제48조의16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제8장 잡칙**  제49조 실용신안원부에의 등록  제50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제50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특칙  제51조 실용신안등록표시  제52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53조 실용신안공보  제54조 수수료  제54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55조 특허법의 준용  **제9장 벌칙**  제56조 침해죄  제57조 사기행위의 죄  제58조 허위표시의 죄  제59조 위증 등의 죄  제60조 비밀누설죄  제60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료  (제63조)  (제64조)  **부칙** |